

# 대경드론리서치센터 규정

제정 2016. 7. 28. 개정 2017. 5. 23.

**제1조(명칭)** 본 센터는 대경대학교 대경드론리서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센터는 드론산업분야의 콘텐츠와 기초조종술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을 연구하여 학교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치)** 센터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센터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드론제작에 관한 연구
2. 드론레이싱팀 창단과 운영에 관한 사업
3. 드론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운영과 연구 사업
4. 항공촬영 앱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
5. 드론 이벤트 사업에 관한 운영 연구
6. 드론 캠프 및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업 연구
7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**제5조(구성)** ①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 
<개정 2017.5.23.>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센터에는 교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겸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5.23.>

**제6조 삭제** <2017.5.23.>

**제7조(예산 및 회계)**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7.5.23.>

**제8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